

# [제60회 변리사시험 대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]

디자인보호법  
김영남 변리사

2020년 10월 ~ 2022년 10월까지 8번 개정되었습니다.

[법률 제17526호, 2020. 10. 20., 일부개정]

[법률 제17725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[법률 제18093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[법률 제18404호, 2021. 8. 17., 일부개정]

[법률 제18500호, 2021. 10. 19., 일부개정]

[법률 제18815호, 2022. 2. 3., 일부개정]

[법률 제18886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[법률 제18998호, 2022. 10. 18., 일부개정]

개정법을 모두 비교 정리하였습니다.

아래의 표에서 왼쪽이 구법, 오른쪽이 개정법입니다.

1. 제 2 조
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디자인”이란 <u>물품[물품의 <b>부분(제42조는 제외한다) 및 글자체</b>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(美感)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3. ~ 6. (생략)</p> <p><u>7. “실시”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(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디자인”이란 물품[물품의 <u>부분, 글자체 및 화상(畫像)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]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(美感)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2의2. “화상”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·기호 등[기기(器機)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,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]을 말한다.</u>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7. “실시”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p><u>가. 디자인의 대상이 물품(화상은 제외한다)인 경우 그 물품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·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을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청약(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</u></p> <p><u>나.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 그 화상을 생산·사용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청약(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기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 또는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·대여·수출·수입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·대여하기 위하여 청약(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는 행위</u></p>
---	---

2. 제17조

<p>제17조(기간의 연장 등) ① <u>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</u>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,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</p>	<p>제17조(기간의 연장 등) ① <u>특허청장</u>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69조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기간,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</p>
---	---

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	있다. 다만,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
--	--

## 2. 제18조

제18조(절차의 무효) ① (생략)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<u>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면</u>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18조(절차의 무효) ① (현행과 같음)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<u>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</u>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-	--

## 4. 제48조

제48조(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) ① ~ ③ (생략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. 1. (생략) <u>2. 제64조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때</u> 3. (생략)	제48조(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. 1. (현행과 같음) <u>2. 제64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기간</u> 3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## 5. 제49조

제49조(보정각하) ① (생략)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<u>그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</u>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(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)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	제49조(보정각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<u>제119조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</u> 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디자인등록출원(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일부 디자인을 말한다)에 대한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--	--

## 6. 제50조

<p>제50조(출원의 분할) ① ~ 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         <p>&lt;신설&gt;</p>	<p>제50조(출원의 분할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,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.</u></p>
---	--

## 7. 제87조

<p>제87조(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u>3년</u>이 지나면 할 수 없다.</p>	<p>제87조(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<u>5년</u>이 지나면 할 수 없다.</p>
---	---

## 8. 제53조

<p>제53조(출원공개 효과) ① (생략)</p> <p>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<u>통상적</u>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제53조(출원공개 효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제52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디자인임을 안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<u>합리적</u>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	--

9. 제63조

<p>제63조(거절이유통지) ① 심사관은 <u>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</u>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(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, 이하 "거절이유"라 한다)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3조(거절이유통지) ① 심사관은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(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, 이하 "거절이유"라 한다)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p> <p><u>1.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</u></p> <p><u>2.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</u></p>
---	---

10. 제64조

<p>제64조(재심사의 청구)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(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)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<u>30일</u>(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)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64조(재심사의 청구)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(재심사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제외한다)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<u>3개월</u>(제17조제1항에 따라 제120조에 따른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) 이내에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여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제120조에 따른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--	--

11. 제66조의2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<u>제66조의2(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)</u></p> <p><u>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한 출원에 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다시 심사(이하 "직권 재심사"라 한다)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<u>1. 거절이유가 제35조제1항, 제37조제4항,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</u></p> <p><u>2. 그 디자인등록결정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	<p>3.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 재심사를 하려면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결정의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.</p>
--	--

**12. 제84조**

<p>제84조(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)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<u>책임질 수 없는</u>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84조(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)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<u>정당한</u> 사유로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. 다만,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--	---

**13. 제86조**

<p>제86조(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특허청장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86조(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79조 및 제85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</li> <li>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</li> <li>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</li> </ol>
---	---

<p>③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등록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디자인권자가 하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받은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등록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
--	---

**14. 제87조**

<p>제87조(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)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.</p> <p>1.2. (생 략)</p> <p>3.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<u>디자인등록출원료 및 우선권주장 신청료</u>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87조(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)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.</p> <p>1.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디자인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<u>디자인등록출원료, 우선권주장 신청료, 비밀디자인 청구료 및 출원공개 신청료</u>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--	--

**15. 제110조**

<p>제110조(<u>질권행사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</u>)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<u>질권설정</u>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.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0조(<u>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디자인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</u>) 디자인권자(공유인 디자인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)는 디자인권을 목적으로 하는 <u>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디자인권의 분할청구</u> 전에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. 이 경우 디자인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디자인권을</p>
--	--

	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16. 제111조**

<p>제111조(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디자인권 소멸)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111조(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의 디자인권 소멸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디자인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(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까지 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된다.</p>
---	--

**17. 제115조**

<p>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<u>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. 다만,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.</p>	<p>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제115조(손해액의 추정 등)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<u>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1. 그 물건의 양도수량(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을 뺀 수량)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</p>
--	---



③ (생략)

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**통상적**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·⑥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지 아니하는 수량에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

2. 그 물건의 양도수량 중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을 넘는 수량 또는 그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 있는 경우 이들 수량(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,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의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량을 뺀 수량)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자기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**합리적**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⑦ 법원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
2.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
3. 침해행위로 인하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피해규모

	<p><a href="#">4.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</a></p> <p><a href="#">5. 침해행위의 기간·횟수 등</a></p> <p><a href="#">6.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</a></p> <p><a href="#">7.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</a></p> <p><a href="#">8.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</a></p>
--	---

**18. 제119조**

제119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)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<b>30일</b>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	제119조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)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<b>3개월</b>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--	---

**19. 제120조**

제120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)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<b>30일</b>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	제120조(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)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<b>3개월</b>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---	---

**20. 제128조**

제128조( <b>심판청구의 각하 등</b> ) ① (생략) 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<b>아니하면 결정으로 심판청구를</b> 각하하여야 한다.	제128조( <b>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등</b> 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<b>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26조제2항 또는 제12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 등을 결정으로</b> 각하하여야 한다.
---	--

**21. 제146조의2**

<b>&lt;신설&gt;</b>	제146조의2(적시제출주의) 심판절차에서의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46조, 제147조 및 제149조를 <b>준용한다.</b>
-------------------	--

22. 제152조의2
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52조의2(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회부) ① 심판장은 심판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심판사건의 절차를 중지하고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「발명진흥법」 제41조에 따른 <u>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</u>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<p>② 심판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때에는 해당 심판사건의 기록을 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심판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료되면 제1항에 따른 중지 결정을 취소하고 심판을 재개하며,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해당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.</p>
--------------------	--

23. 제195조의2
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195조의2(디자인등록결정 이후의 직권 재심사의 특례)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--------------------	---

24. 제207조

<p>제207조(디자인등록출원·심사·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) ① 디자인등록출원, 심사,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, 심판,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&lt;신 설&gt;</p> <p>2.3. (생략)</p>	<p>207조(디자인등록출원·심사·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) ① 디자인등록출원, 심사,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, 심판, 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디자인등록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의2. 제152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, 심사,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, 심판, 재심에 관한 서류나 디자인등록원부를 반출하는 경우</u></p> <p>2.3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

25. 제220조

<p>제220조(침해죄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죄는 <u>고소가 없으면</u>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</p>	<p>제220조(침해죄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죄는 <u>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</u>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</p>
--	---